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7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7월 01일  
발 의 자: 김현기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박영한, 서호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채수지, 최진혁, 허 · 훈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의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10조제2항)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렴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를 “수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2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서울특별시회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p> <p>2. ~ 6. (생략)</p> <p>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u>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관련 조합, 협회 및 단체 등은 요금</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견청취) ① ----- ----- 따른 ----- ----- ----- <u>수렴하여야</u> ----- ----- -----.</p> <p>② <u>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 ----- -----</p>

조정계획을 시장 및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의회 -----  
-----  
-----.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안 제10조제2항)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